



2025년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지원제도 안내문

2025. 01. 22

MICE협력팀



2025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원행사 요건	<input type="checkbox"/> 근거/요건<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국제기구 가입 불문) 2. 3개국 이상 3. 총 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회의 4. 회의 일수 2일 이상 5. ICCA, UIA 등재 국제회의(유치, 해외홍보만 해당)																																																																				
보조금 산출기준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산출기준 • 유치 및 해외홍보 : 컨벤션 국제기구(ICCA, UIA)의 등록된 수(최근 3개년 평균의 80%)와 주관단체가 등록한 외국인 수 중 작은 수 적용 • 개최 : 외국인 참가자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금 심사절차	<input type="checkbox"/> 개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 1차 (우선지원 선별) 1순위: 비수도권 개최회의 2순위: 의/과학 이외 회의 3순위: 1회차 신규회의 </td> <td style="width: 33%;"> 2차 (심사평가) 가점항목 외국인 참가규모 제출서류 완결성 등 </td> <td style="width: 33%;"> 3차 (전문가 평가) 2차 심사평가 결과검토확인 </td> </tr> </table> <p>※ 유치·해외홍보: 신청근거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후 선착순 수시 접수 지원</p>	1차 (우선지원 선별) 1순위: 비수도권 개최회의 2순위: 의/과학 이외 회의 3순위: 1회차 신규회의	2차 (심사평가) 가점항목 외국인 참가규모 제출서류 완결성 등	3차 (전문가 평가) 2차 심사평가 결과검토확인																																																																	
1차 (우선지원 선별) 1순위: 비수도권 개최회의 2순위: 의/과학 이외 회의 3순위: 1회차 신규회의	2차 (심사평가) 가점항목 외국인 참가규모 제출서류 완결성 등	3차 (전문가 평가) 2차 심사평가 결과검토확인																																																																			
보조금 산식	<input type="checkbox"/> 부문별 참가자 규모에 따른 정액+가점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 (외국인수)</th> <th colspan="4">유치</th> <th colspan="2">해외홍보</th> </tr> <tr> <th colspan="2">'25.6월 이후</th> <th colspan="2">('25.1월~5월)</th> <th rowspan="2">기본</th> <th rowspan="2">가점</th> </tr> <tr> <th>기본</th> <th>가점</th> <th>기본</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소형(50-500)</td> <td>15</td> <td>(21)</td> <td>22.5</td> <td>(31.5)</td> <td>6</td> <td>(8.4)</td> </tr> <tr> <td>중형(501-1,000)</td> <td>20</td> <td>(28)</td> <td>30</td> <td>(42)</td> <td>12</td> <td>(16.8)</td> </tr> <tr> <td>대형(1,001-)</td> <td>30</td> <td>(42)</td> <td>45</td> <td>(63)</td> <td>20</td> <td>(28)</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개최</th> </tr> <tr> <th>구분(외국인수)</th> <th>지원한도</th> <th>(가점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소형 I (50-75)</td> <td>5</td> <td>(8.5)</td> </tr> <tr> <td>소형 II (76-150)</td> <td>7</td> <td>(11.9)</td> </tr> <tr> <td>소형 III (151-250)</td> <td>10</td> <td>(17)</td> </tr> <tr> <td>중형 I (251-375)</td> <td>15</td> <td>(25.5)</td> </tr> <tr> <td>중형 II (376-500)</td> <td>20</td> <td>(34)</td> </tr> <tr> <td>대형 I (501-750)</td> <td>30</td> <td>(51)</td> </tr> <tr> <td>대형 II (751-1,000)</td> <td>40</td> <td>(68)</td> </tr> <tr> <td>대형 III (1001-)</td> <td>60</td> <td>(102)</td> </tr> </tbody> </table> <p>* 유치지원액은 '25년 5월 접수건까지 위의 산식표를 따르며 추후 조정 ** 가점은 0.1점당 10% 가산, 가점 모두 받더라도 최대 가점을 넘길 수 없음</p>	구분 (외국인수)	유치				해외홍보		'25.6월 이후		('25.1월~5월)		기본	가점	기본	가점	기본	가점	소형(50-500)	15	(21)	22.5	(31.5)	6	(8.4)	중형(501-1,000)	20	(28)	30	(42)	12	(16.8)	대형(1,001-)	30	(42)	45	(63)	20	(28)	개최			구분(외국인수)	지원한도	(가점포함)	소형 I (50-75)	5	(8.5)	소형 II (76-150)	7	(11.9)	소형 III (151-250)	10	(17)	중형 I (251-375)	15	(25.5)	중형 II (376-500)	20	(34)	대형 I (501-750)	30	(51)	대형 II (751-1,000)	40	(68)	대형 III (1001-)	60	(102)
구분 (외국인수)	유치				해외홍보																																																																
	'25.6월 이후		('25.1월~5월)		기본	가점																																																															
	기본	가점	기본	가점																																																																	
소형(50-500)	15	(21)	22.5	(31.5)	6	(8.4)																																																															
중형(501-1,000)	20	(28)	30	(42)	12	(16.8)																																																															
대형(1,001-)	30	(42)	45	(63)	20	(28)																																																															
개최																																																																					
구분(외국인수)	지원한도	(가점포함)																																																																			
소형 I (50-75)	5	(8.5)																																																																			
소형 II (76-150)	7	(11.9)																																																																			
소형 III (151-250)	10	(17)																																																																			
중형 I (251-375)	15	(25.5)																																																																			
중형 II (376-500)	20	(34)																																																																			
대형 I (501-750)	30	(51)																																																																			
대형 II (751-1,000)	40	(68)																																																																			
대형 III (1001-)	60	(102)																																																																			
주요 가점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유치/해외홍보(최대 0.4)</th> <th style="width: 50%;">개최(최대 0.7)</th> </tr> </thead> <tbody> <tr> <td> ① (0.3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개최지역 ② (0.1점)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③ (0.1점) 개최일수 3일 이상 </td> <td> ① (0.3점) 수도권 외 개최지역 ② (0.1점) 코리아유니크베뉴 활용 ③ (0.1점)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④ (0.1점)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⑤ (0.1점)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중소형회의의만 해당) ⑥ (0.1점) UIA 또는 ICCA 등록 </td> </tr> </tbody> </table>	유치/해외홍보(최대 0.4)	개최(최대 0.7)	① (0.3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개최지역 ② (0.1점)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③ (0.1점) 개최일수 3일 이상	① (0.3점) 수도권 외 개최지역 ② (0.1점) 코리아유니크베뉴 활용 ③ (0.1점)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④ (0.1점)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⑤ (0.1점)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중소형회의의만 해당) ⑥ (0.1점) UIA 또는 ICCA 등록																																																																
유치/해외홍보(최대 0.4)	개최(최대 0.7)																																																																				
① (0.3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개최지역 ② (0.1점)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③ (0.1점) 개최일수 3일 이상	① (0.3점) 수도권 외 개최지역 ② (0.1점) 코리아유니크베뉴 활용 ③ (0.1점)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④ (0.1점)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⑤ (0.1점)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중소형회의의만 해당) ⑥ (0.1점) UIA 또는 ICCA 등록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제안서, 유치발표 PT,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 대행업체 기획료 - 본부단체 VIP 사전 방한답사(3인 이하) 및 숙박비, 온라인 방한답사 -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 본부단체 운영 사이트 광고 등 온라인 홍보 등 ■ 해외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홍보 일반(*BI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 전차대회/유사대회 행사 참가(*홍보부스 운영, Korea Night 및 기념품 제작) ■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기술 활용비용, 회의장 임차료 - 공식 오만찬,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제작물, 문화예술공연 - 해외연사 초청 항공비 <p>* 단, UIA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 국내/정치/설교/종교/스포츠/상업적 성격의 모임 대상 지원금 결정 산식은 위와 달리 적용</p>																																																																				

2025년도 국제회의 지원제도 안내

(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

1 2025년 변경사항

	내용	2025년(변경)	2024년			
공통 (유치 홍보 개최)	보조금 신청/수령기관 한정	주최/주관기관	주최/주관기관, 대행기관(PCO)			
	보조금 승인/집행 통보방식 변경	주최/주관기관	신청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공사-주최/주관기관간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약서] 제출 (주최/대행기관) - [지원금 수령확인서] 제출 - 용역체결계약서 제출 시 대행용역비 이체확인증 제출(대행사가 비용 지출하거나 보조금 수령기관인 경우)	서약서 제출 (주최/대행기관)			
유치	지원금 한시적 상황	'25년 1~5월 접수건에 한해 전년대비 유치지원금 1.5배 상향조정(자세한 내용은 요약표내 보조금 산식표 참고)	-			
개최	심사평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우선지원회의 선별 2차: 항목별 심사 3차: 전문가 평가 ▪ 유치·해외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과 동일 ※행사 종료후 심사평가항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근거에 따른 요건심사 - 선착순 접수지원			
	MICE안전관리매뉴얼 준수 의무적용	대형회의(외국인 501명 이상) 의무 이행 ※MICE안전관리매뉴얼 가점은 중소형회의에 한해 부여	가점유형 선택			
	지원항목 축소	'방역물품' 항목 삭제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 제한	3년 연속 지원한 행사는 후순위 배정	-			
	하이브리드 회의	온라인 외국인참가자 추가지원 없음	온라인 외국인참가자 추가지원			
	심사평가항목 미이행시 패널티 적용	- 우선지원 조건(개최지*,회의분야,회차) 변동시, 재산정 금액에서 30% 감액조정 *개최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r> <td>비수도권→비수도권</td> <td>조정대상X</td> </tr> <tr> <td>비수도권→수도권</td> <td>재산정-감액</td> </tr> </table> ※부산,제주는 비수도권에서 제외	비수도권→비수도권	조정대상X	비수도권→수도권	재산정-감액
비수도권→비수도권	조정대상X					
비수도권→수도권	재산정-감액					
	- 가점항목 미이행시, 재산정 금액에서 5% 감액조정					

2 신청자격

본 지원제도 신청 주체는 아래 기관 혹은 단체에 한정한다.

- ▶ 국내 주최·주관기관 (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
 - ※ 단, 주최, 주관기관 중 국내기관이 없는 경우, 한국관광공사 별도 문의 요청
 - ※ 단,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여야 함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3 지원대상 회의 (※보조금 지원 관련)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가.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4 지원구분 ※ 동일 국제회의 건당 유치/해외홍보/개최 단계별 각 1회씩 지원

- **유 치 지원** :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
- **해외홍보 지원** : 국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전차대회에서 홍보 활동 전개 등 해외홍보 시
 - ※ 그 외 기타 유사분야 회의 내 홍보 활동은 별도 심사·검토를 거쳐 지원가부 결정
- **개 최 지원** : 국내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5 접수일정

- 유치·해외홍보: 정기 + 수시접수
- 개최지원: 정기(상·하반기) + 하반기 수시접수(잔여예산 내)
 - ※ 정기접수는 수시접수에 우선하며 '25년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중단

6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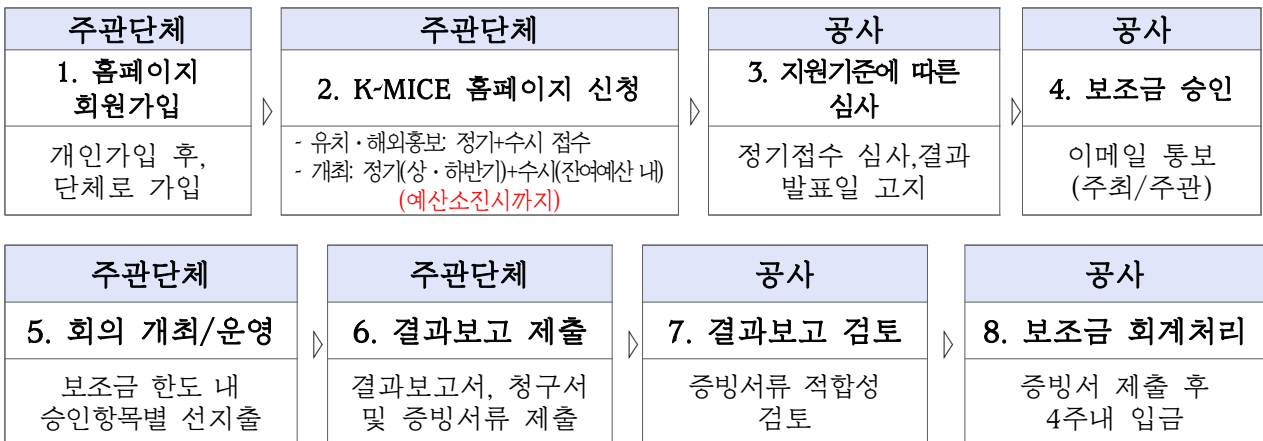
가. 보조금 지원

※ 주최/주관단체 **先 집행**,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後 보조금 지급**

구분	보조금 지원 (가능/불가능) 항목
유치	<p>□ 유치제안서, 유치발표용 PT,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대행업체 기획료, 기념품 제작비 ※ 기념품은 2종류 제작비만 지원 가능</p> <p>□ 본부단체 VIP 사전답사(3인 이하): 왕복 항공료, 체제기간 숙박비 ※ 항공은 Business Class*까지(*좌석업그레이드 가능하나 비용은 Business Class 상응하는 부분만 지원, 차액은 신청기관 부담), 숙박은 Standard까지 가능 ※ 외국인 2천명 이상 대형 회의 유치시 사전답사 6인 가능</p> <p>□ 온라인 방한답사 콘텐츠 제작, 온라인 유치활동 경비(홍보 콘텐츠 제작, 광고비)</p> <p>□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 : 조직위 또는 유치추진 학회/협회 소속 회원 2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 : 유치 홍보부스 운영 - 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엑스배너 등) :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개최비 - 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PT가 이뤄지는 회의 참가시만 지원 ※ 항공은 Business Class까지, 숙박은 1인 1실 Double Room 일반객실 기준 ※ 유치와 관련 없는 국가(도시)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구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단, 단순 경유일 경우는 제외)</p>
	<p>· 해외현장 유치 활동 직원 출장여비, 현지 교통비, 회의 등록비 등 ※ 호텔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 불가</p> <p>· 방한실사시 식비, 차량 렌탈비, 투어경비, 일비 등</p> <p>· 물품 발송비, 소모품 등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p> <p>· 공식 연회 개최(Korea Night)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p>
해외 홍보	<p>[일반]</p> <p>□ 기본 BI, 캐릭터,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개발</p> <p>□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외국어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라인 광고 ※ 개최지원의 ‘미팅테크놀로지’에 홈페이지 제작 항목 신청 불가</p> <p>[행사참가]</p> <p>□ 홍보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및 공연비 ※ 개최 직전 전차대회 및 유사회의 중 1회에 한해 참가 인정</p> <p>□ 증정용 기념품 제작 ※ 기념품은 2종류 이하로 제작</p>
	<p>[일반]</p> <p>· 전차대회 등과 무관한 기념품(* BI 등과 함께 기념품 시안은 개발 가능하나, 실제 기념품은 홍보할 전차대회/유사대회 행사가 있는 구체화된 경우에만 제작 가능)</p> <p>· 영구 활용 목적의 홈페이지 개발(회의 개최년 이후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함)</p> <p>· 국문 제작물, 광고 일체</p> <p>[행사참가]</p> <p>· 출장여비(일비/식음료비/숙박비/항공료 등 교통비 일체 지원불가)</p> <p>· 물품발송비, 항공 수화물 초과 운반비, 회의 등록비 및 인건비 성격의 비용 등</p>

구분		보조금 지원 (가능/불가능) 항목
개최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디지털기술 활용비(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회의 장비 임차 등) <input type="checkbox"/> 회의장 임차료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공연 <input type="checkbox"/> 공식 오·만찬 연회 식음료비, 커피브레이크 <input type="checkbox"/>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제작물 <input type="checkbox"/> 해외연사 초청: 최대 3인 의 항공비(Business Class*까지) ※ 좌석업그레이드 가능하나 비용은 Business Class상응하는 부분만 지원, 차액은 신청기관 부담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연사 강연비, 활동경비 / 참가자 숙박비, 여비, 교통비 등 인건비 성격의 비용 · 자산 취득 성격의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 구매 · 운영비(진행요원 인건비 식비 등) · 물품 및 기념품 구매비 ·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비(신문, 온라인뉴스, 학술지 광고 등)

나. 보조금 지원절차



다. 보조금 결정방식

□ 기준인원(참가자 수)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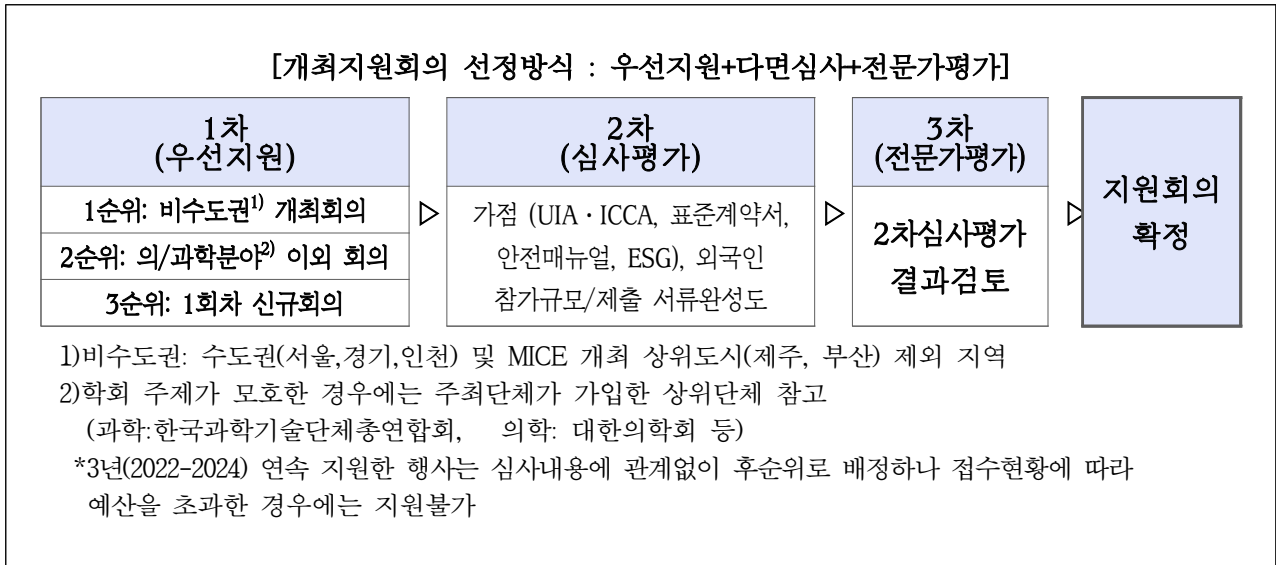
- 유치·해외홍보 : 컨벤션 국제기구(ICCA, UIA)*에 수록된 국제회의 정보(통계)의 참가자수(최근 3개년 평균의 80%)와 주관단체가 등록한 외국인 참가자수 중 작은 수 적용

- ICCA 국제회의 기준
 -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참가자 50명 이상의 회의
- UIA 국제회의 기준
 -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 또는 UIA DB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등재될 자격이 있는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 개최 : 외국인 참가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결정(전차대회 참가규모 및 ICCA, UIA에 수록된 평균 참가자수를 토대로 예상 외국인수 적정성 검토)

□ 심사 및 선정

- 유치·해외홍보 : 신청근거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후, 선착순 접수지원
- 개최



7 유의사항

- 국제회의 유치/개최/해외홍보 계획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규모를 과대 계상하여 작성할 경우 심사, 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적절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활동 결과가 계획대비 현저히 부실할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처분
-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해당 단체는 향후 5년간 공사 지원제도 이용 불가
- 문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관광공사 혹은 지역CVB에 제출한 동일한 증빙(인보이스, 계산서 등)으로 공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수령기관은 반드시 주최/주관단체만 가능

8 신청방법

- ▶ 공사 www.visitkorea.or.kr 및 K-MICE (www.koreamice.or.kr) 회원가입
- ▶ K-MICE 로그인 > 사업지원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안내 및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참고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 (Tel) 033-738-3293/3296(유치지원)
033-738-3246(해외홍보)
033-738-3299(개최지원)
(e-mail) convention100@knto.or.kr